

### 행 정 명 령

올버니, 브룸, 셔냉고, 컬럼비아, 델라웨어, 더치스, 그린, 몽고메리, 오렌지, 옷세고, 렌셀러,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쇼하리, 설리번, 티오가, 얼스터, 워싱턴 및 인접 카운티에 비상사태 선언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그리고 그 후에도 노리스터(Nor'easter)가 뉴욕주에 영향을 미쳐, 올버니, 브룸, 셔냉고, 컬럼비아, 델라웨어, 더치스, 그린, 몽고메리, 오렌지, 옷세고, 렌셀러,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쇼하리, 설리번, 티오가, 얼스터, 워싱턴 및 인접 카운티에서 필수 대중 교통, 유틸리티 서비스, 공중 보건, 공공 안전 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겨울 폭풍은 시간당 최대 3인치의 속도로 최대 24인치의 눈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돌풍이 40mph의 속도로 불고, 낮은 지역에서는 해안 홍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광범위한 정전, 도로 폐쇄, 이동 중단, 그리고 영향받은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8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임박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로써 올버니, 브룸, 셔냉고, 컬럼비아, 델라웨어, 더치스, 그린, 몽고메리, 오렌지, 옷세고, 렌셀러,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쇼하리, 설리번, 티오가, 얼스터, 워싱턴, 그리고 인접 카운티 내의 영토 경계 내에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부터 발효되는 주 비상사태(State Disaster Emergency)를 선언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1년 1월 16일 토요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행정부법 제29조 제2-B항에 따라, 본인은 공공 보건, 복지, 안전 보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뉴욕주 종합 비상 운영 계획(Stat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을 시행을 명령하고, 모든 필수 기관에 이러한 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영향을 받은 지방정부 및 개인이 이 재난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며 공중 보건, 복지 및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승인합니다.

추가로, 이 선포는 연방차량운송업안전규칙(Federal Motor Carrier Safety Regulations, FMCSR)의 파트 390 내지 399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는 49 C.F.R. 390.23(a)(1)(A)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도로 청소 인력이 뉴욕주 전력 복구 인력이 서두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연방차량운송업안전규칙의 경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 비상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법률, 지역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를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하기 위해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 발효일부부터 2021년 1월 16일 토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재난 비상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지방 정부, 개인 및 기타 주 정부 이외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 공급품, 서비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또는 중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까지, 주 재정법(State Finance Law) 제97-G항.
- 주 재정법의 제112항,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제V조, 제I항과 일치하는 범위까지, 그리고 주 계약에 추가 작업, 현장 및 시간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필요한 상품, 용역, 기술 및 자재를 표준 고지 및 조달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주 재정법 제163항 및 경제개발법(Economic Development Law) 제4-C조.

또한, 본인은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1년 1월 16일 토요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시 수정합니다.

- 도로, 고속도로 및 거리에서 교통 및 차량 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행정부법 제24항, 고속도로법(Highway Law) 제104 및 346항, 차량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제1602, 1630, 1640, 1650 및 1660항, 운송법(Transportation Law) 제14(16)항, 빌리지법(Village Law) 제6-602 및 17-1706항, 일반도시법(General City Law) 제20(32)항, 2급도시법(Second Class Cities Law) 제91항, 뉴욕시 행정규칙(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제19-107(ii)항, 그리고 뉴욕주 규정집(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21장의 제107.1항.

2020년 12월 1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